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황성군수
소송수행자 염경숙, 정연덕, 이장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5누27897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제2항, 이하 '제한요구'라고 한다), 제한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한편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로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계기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제1호),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주세무서장은 원고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한요구'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1. 17.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제한요구 이전인 2003. 12. 10.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제외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한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

